

【 해외금융뉴스: 중국 】

중국 손보업계, 자동차 접촉사고 자기보상 제도 시행

□ 중국 손해보험업협회는 차량 사고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‘접촉사고 자기보상 제도’를 올해 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함.

- 차량 운전자가 접촉사고 자기보상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6가지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.

접촉사고 자기보상 제도 적용 성립 요건

번호	주요 내용
1	2대 혹은 2대 이상 차량의 접촉사고일 것
2	사고차량 모두가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
3	차량손실 이외의 인명이나 기타재산 손실이 없을 것
4	각 사고차량 보상액이 2,000위안을 초과하지 않을 것
5	쌍방과실이어서 할 것
6	쌍방 모두가 접촉사고 자기보상 제도를 이용하는데 동의할 것

자료 : 중국손해보험업협회 홈페이지.

- 기존에는 교통사고 당사자가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직원이 모두 현장에 도착해야만 보상액을 확정할 수 있었지만, 제도 시행 후에는 자동차 소유주가 먼저 경찰과 보험회사에 신고를 한 후 상대방 보험사 보상직원을 기다릴 것 없이 자신의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서 사고처리를 하면 해당 보상금액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도 지급하도록 함.
- 업계는 접촉사고 자기보상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절차가 단순해져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시간이 10~15분 정도 소요되는 등 전체적으로 30% 정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- 접촉사고 자기보상 제도는 중국인민보험공사(人保財險), 핑안손해보험(平安財險), 타이핑양손해보험(太平洋財險) 등 중국 보험업협회 소속 21개 손해보험회사 모두 참여하기로 함.

(중국손해보험업협회 홈페이지, 성도상보 2/1, 매일경제신문 2/3)